4단계 BK21「스마트 기계부품 지역 미래전문인력양성팀」운영규정

제정 2021.02.01.

개정 2021.05.01.

개정 2021.08.01.

개정 2021.11.01.

개정 2022.01.18.

개정 2022.03.0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하는 조선대학교 "스마트 기계부품 지역 미래전문인력양성팀"(이하'교육연구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업목표의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기간) 사업의 사업기간은 84개월로 하며, 그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교육연구팀의 구성)

- ① 교육연구팀은 BK21 플러스 사업 참여요건과 자격을 갖춘 조선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과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 ② 교육연구팀의 팀장은 당초 교육부의 4단계 BK21 사업공모에 사업팀으로 선정되어 협약서를 체결한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팀장을 교체하고자 할경우에는 교육부의 『4단계 BK21 사업 사업팀장 변경처리기준』을 따른다.
- ③ 교육연구팀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해외학자, 행정전 담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 (교육연구팀장 및 교육연구팀장의 책무)

- ① 교육연구팀에 교육연구팀장을 두며, 교육연구팀장은 교육연구팀을 대표하고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무를 갖는다.
 -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 2. 사업의 총괄 수행
 -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 4. 사업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 5. 기타 교육연구팀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및 총장이 정하는 사항
- ② 교육연구팀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 또는 협약체결 시 정한 사업 참여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을 따라야 한다.
- ③ 교육연구팀장은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해당 사업의 목적 및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 다.
- ④ 교육연구팀장은 사업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과 자체 성과평가 기준 등에 대하여 참여교수들 에게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팀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참여교수의 자격 및 의무 사항)

- ① 교육연구팀 참여 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 교육연구팀의 참여 교수는 교육부와 교육연구팀에서 제시한 4단계 BK21 사업 참여 최소 요건을 갖춘 조선대학교 학부 기계공학과 및 일반대학원 기계공학과 교수이어야 한다. (4단계 BK21 사업 관리 규정 제9조 ②항의 동일 학부 및 동일 대학원 기준 적용)
 - 2. 참여 교수가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중이거나,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 (6개월 이상)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에는 교육연구팀의 장 및 대학의 장이 해당 기간 동안학생을 지도 (논문 지도 포함)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교수의 교육연구팀 참여를 인정한다.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교수는 교육연구팀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교육연구팀 참여 교수의 1년간 최소 업적 기준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21.05.01. 개정)
 - 1. 참여교수가 저자 (주저자 및 공동저자)로 표시된 SCI(SCIE) 급 논문 3.5편 이상을 게 재하여야 함. (2021.05.01. 개정)
 - 단, 3.5편 이상의 논문 중 주저자 (제 1저자 및 교신저자) 의 논문이 2편 이상이어 야 함. (2021.05.01. 개정)
 - 주저자로 등록된 논문 1편에 대해서는 공동저자 2편으로 인정함. (1편에 대해서만 인정함.) (2021.05.01. 개정)
 - 당해연도 JCR 기준 분야별 상위 10 % 이내 논문의 경우 2편으로 환산하고, 분야별 상위 30 % 논문의 경우 1.5 편으로 환산함.
 - 국제특허 등록의 경우 별표 1. 업적 산정 기준의 4.업적 등가표에 따라 환산함.
 - 기술 이전의 경우 별표 1. 업적 산정 기준의 4.업적 등가표에 따라 환산함.
 - 2. 사업 계획서상의 정량/정성 성과 항목 (공동 기술 개발, 기술지도, On/Off 라인 교육, 취업 연계 연구원 교육,대학원생 유치 등) 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연차별 사업계획서상 정량/정성 성과 목표 내용과 해당 목표의 달성 여부는 운영위

원회에서 결정함.

- 3. 교육연구팀 참여 교수는 1편/년 이상 참여 학생이 공저자로 이상으로 되어 있는 SCI(SCIE) 급 논문을 게재하여야 함.
 - 단, 신임 교수는 학생 참여 시점부터 1년간 ②항 6 의 적용을 유예함.
- 4. 참여교수와과 참여학생의 SCI(E)급 논문 각각 3편과 1편을 합하여 총 논문 최소 편수를 4편이라고 산정한다.
 - 참여 교수의 논문과 참여학 생의 논문은 중복이 가능함
 - 동일 논문에 참여 학생이 2명 이상이 등록된 경우에는 참여 학생 1인만 인정함. (참 여 교수가 해당 학생을 지정하여야 함.)
- 5. SCI(E)급 논문의 Impact Factor 와 해당 저널의 분야별 백분율은 평가를 수행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 저널의 Impact Factor 와 분야별 백분율을 적용한다.
 - 1차년도와 2차년도 연구 실적에 대해서는 JCR IF2020 와 해당 저널의 분야별 백분율을 적용함.
 - 3차년도부터는 당해연도 발표된 JCR IF 와 해당 저널의 분야별 백분율을 적용함. (예 : 3차년도 평가시에는 JCR IF2021 과 해당 저널의 분야별 백분율을 적용함.)
- ③ 위 '②' 항의 최소 연구 업적 기준과 의무에 대한 평가는 각 연차가 종료될 시점에 시행한다. 단, 사업이 시작되는 2020년도 (2020.09.01.~2021.02.28.) 기간의 평가는 생략하며, 2021년도(2021.03.01.~2022.02.28.) 종료시점에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최소 연구 업적 기준과 의무에 대한 평가를 함께 수행한다.

제6조 (참여교수의 업적 평가 : RQI-P)

- ① 본 교육연구팀의 참여 교수는 매년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연구업적, 교육활동 및 봉사활동 등에 대하여 본 규정에 의거해 평가한다.
- ② 교육연구팀장과 운영위원회에서는 ①항의 기준에 따라 참여교수를 평가하고, 교수별 업적 산출은 연구업적물의 개별점수를 모두 합산한 후 이를 당해연도 4단계 BK21 지원 금액으로 나누어 각 연구실의 단위업적으로 산출한다.
- ③ ①과 ②항의 내용의 제외한 세부적인 참여 교수 업적 평가 내용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7조 (참여교수의 의무 사항 미달성에 대한 조치)

- ① 제5조 ②항의 참여 교수의 1년간 최소 업적 기준 및 의무 사항을 달성하지 못한 참여 교수의 경우 참여 대학원생의 장학금 지원 금액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차감한다.
 - 1. 차감된 금액은 "제6조"의 점수기준에 비례하여 차감되지 않은 다른 참여 교수의 참여 대학원생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 2. ①항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 ② 신임 교수는 학생 참여 시점부터 1년간 ①항의 적용을 유예함.
- ③ 참여 교수의 의무 사항 미달성에 대한 조치 사항은 각 연차 종료 시점에 결정하고, 해당 교수별 조치 사항은 차기년도 사업 시작 시점부터 적용한다. 단, 사업이 시작되는 1차년 도 (2020.09.01.~2021.02.28.) 기간의 평가는 생략하며, 2차년도 (2021.03.01.~2022.02.28.) 종료시점에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함께 수행한다.

제8조 (참여 교수 변경 기준)

- ① 교육연구팀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 참여 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 1. 2년간 참여 교수 업적 및 의무 사항 이행이 제5조 ② 항의 참여 교수 최소 업적 기준 및 의무 규정을 현저히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 2.참여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망, 퇴직, 이직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교육연구팀 참여 자격을 갖춘 신임 교원이 교육연구팀이 속한 대학원 학과에 충원된 경우 (단, 사업팀에 참여하는 신임 교원의 70 % 이상이 될 때까지 신임 교원을 충원한다.)
 - 4. 교육연구팀 참여교수의 연평균 연구실적 평균 이상의 연구실적을 보유한 일반대학원 기계공학과 교수가 본 사업팀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단, 이 경우 참여 대학원생이 2명 이상 유지되어야 함.)
 - 5. 운영위원회에서 참여 교수의 교체/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의결한 경우
- ② 교육연구팀에서 참여 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리는 경우, 사업 신청 시를 기준 (중간 평가 이후는 재선정 신청서 기준) 으로 참여 교수의 수를 줄일 수 없다.
- ③ 참여 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 교육 연구팀장과 운영위원회에서는 해당 교수의 자격 요건을 검증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와 해당 교수의 최근 5년간 연구 업적을 첨부하여 본교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전문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기타 참여 교수 변경 기준에 대한 사항들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원 규정 제 10조 (참여교수의 변경 및 예외 사유)에 따른다.

제9조 (신규 참여 교수에 대한 최소 참여 기준)

- ① 신규 참여 교수는 본 교육연구팀에 신규 참여하는 일반대학원 기계공학과 소속 교수를 지칭한다.
- ② 신규 참여 교수의 경우 아래의 1과 2의 2가지 참여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교육연구팀 에 참여할 수 있다.
 - 1. 참여 교수의 최근 3년간 평균 1년당 3편의 SCI(E)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 1) 위 실적중 평균 1년당 1편 이상의 주저자 (제 1 저자 및 교신저자) SCI(E)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주저자로 등록된 논문 1편에 대해서는 공동저자 2편으로 인정함. (1편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3) 당해연도 JCR 기준 분야별 상위 10 % 이내 논문의 경우 2편으로 환산하고, 분야별 상위 30 % 논문의 경우 1.5 편으로 환산한다.
- 4) 1개의 연구논문에 본 교육연구팀 참여교수들이 공동 저자 (주저자 (제 1저자 및 교신저자) 제외) 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 1명의 교수에 대해서만 공동 저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 5) 신임교수는 학생 참여 시점부터 1년간 1항 적용을 유예한다.
- 2. 4단계 BK 사업 참여대학원생 기준을 만족하고 참여 교수가 지도 교수인 참여 대학원생을 사업 기간내에 최소 2명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단, 공동 지도교수와 본 지도교수를 가지는 참여 대학원생을 경우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11조 11항과 같이본 지도교수와 공동 지도교수 모두가 본 교육연구팀에 참여교수로 참여하여야만,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한다.)
- ③ 신임 교수가 아닌 일반대학원 기계공학과 소속 교수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본 교육연구 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이 신규 참여 교수가 ② 항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전체 회의에서 꼭 필요하다고 의결되면 기준 기간 동안 아래 의 1과 2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확약서를 받고 신규 참여 시킬 수 있다. (단, 각 조건들 에 대한 기준 기간 내에 각 조건 중 한가지라도 만족 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년도에 바로 참여 교수에서 제외한다.)
 - 1. 참여 시점부터 2년 내에 참여 교수가 주저자 또는 공동저자인 SCI(E) 논문을 1년당 평균 3편 이상 게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이 실적은 참여 시점부터 2년간 실적을 평균하여 평가한다.)
 - 1) 위 실적 중 평균 1년당 1편 이상의 주저자 (제 1 저자 및 교신저자) SCI(E)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주저자로 등록된 논문 1편에 대해서는 공동저자 2편으로 인정한다. (1편에 대해서 만 인정한다.)
 - 3) 당해연도 JCR 기준 분야별 상위 10 % 이내 논문의 경우 2편으로 환산하고, 분야별 상위 30 % 논문의 경우 1.5 편으로 환산한다.
 - 4) 1개의 연구논문에 본 교육연구팀 참여교수들이 공동 저자 (주저자 (제 1저자 및 교신저자) 제외) 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 1명의 교수에 대해서만 공동 저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 2. 참여 시점부터 1년내에 4단계 BK 사업 참여대학원생 기준을 만족하고 참여 교수가 지도 교수인 참여 대학원생을 최소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4단계 BK 사업 기간 동안 최소 2명 이상의 참여 대학원생을 유지하여한다. (단, 공동 지도교수와 본 지도교수로 구성된 2명의 지도교수가 배정된 참여 대학원생의 경우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11조 11항과 같이 본 지도교수와 공동 지도교수 모두가 본 교육연구팀에 참여교수로 참여하여야만, 참여 대학원생으로 인정한다.)

- ④ SCI(E)급 논문의 Impact Factor 와 해당 저널의 분야별 백분율은 평가를 수행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 저널의 Impact Factor 와 분야별 백분율을 적용한다.
 - 1. 1차년도와 2차년도 연구 실적에 대해서는 JCR IF2020 와 해당 저널의 분야별 백분율을 적용한다.
 - 2. 3차년도부터는 당해연도 발표된 JCR IF 와 해당 저널의 분야별 백분율을 적용한다. (예 : 3차년도 평가시에는 JCR IF2021 과 해당 저널의 분야별 백분율을 적용한다.)
- ⑤ 기타 참여 교수 변경 기준에 대한 사항들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원 규정 제 10 조 (참여교수의 변경 및 예외 사유)에 따른다.

제10조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

① 공동평가기준

- 1. 성과급은 중복수여를 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각 성과급 종류별 배정 인원이나 당해연도 성과급 총액에서 잔여금이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부 인원에 대해 해당 참여교수가 성과급 종류와 다른 분야에서 성과급 중복수여가 가능하다.)
- 2. 참여교수에 대한 별표1 참여교수 업적평가 기준 (RQI-P) 에 명시된 평가 항목들에 대한 득점과 교육연구팀 주관 사업 참여 실적, 교육연구팀 기여도 및 운영위원회의 정성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결정한다.
- 3. 논문의 경우 주저자 (제 1 저자 및 교신저자) 논문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결정한다. (공동 교신의 경우 4단계 BK 환산 논문 편수 기준에 따라 각자의 편수를 산정한다.)
- 4. 논문 실적조사기간(매년 과제 시작일부터 종료일) 중에 정식발간된 논문을 기준으로 하고, 특허 경우 실적 조사 기간 중에 정식으로 출원/등록된 특허를 기준으로 한다.
- 정식 발간된 논문 : 출판연도, 볼륨, 호, 페이지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online 저널은 관련 온라인 출판 정보 (출판연도, 볼륨, 호, 페이지등)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정식 출원/등록된 특허 : 특허 출원/등록일과 해당국가 및 특허 출원/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5. 평가점수가 동점자가 나올 경우 모두 지급한다.
- 6.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 기준은 2차년도부터 적용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 (단, 1 차년도에는 사업 참여 실적과 교육연구팀 발전 기여도 및 중요 실적을 고려하여 운 영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참여교수별 성과급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 7. 기타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 관련 사항들은 교육연구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 ② 성과급 종류 (2021.05.01. 개정) (2021.08.01. 개정) (2022.03.08. 개정)
 - 1. 연구우수상 => 최대 3명
 - 1등 (100만원 이하), 2등 (80만원 이하), 3등(60만원 이하)
 - 2. 산학협력우수상=> 최대 3명
 - 1등 (100만원 이하), 2등 (80만원 이하), 3등(60만원 이하)
 - 3. 사업팀 발전기여상 => 2명
 - 1등 (200만원 이하), 2등 (150만원 이하)
 - 4. 중복 수여 이 경우
 - 각 성과급 종류별 상위 등급에 대한 성과급은 운영 위원회 결정 금액으로 지급하고, 차상위 등급에 대한 성과급 (중복 지급분) 에 대해서 중복 지급에 해당되는 성과급 분야 해당 등수의 최대 성과급 수여 금액의 50 % 이하로 지급함
 - 5. 위 1, 2, 3 및 4 의 성과급 종류와 지급 금액은 2차년도말부터 적용한다. (단, 1차년도 성과급 지급에서는 운영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1인당 최대 80만원 이하의 금액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위원회)

- ① BK21 플러스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교육연구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연구팀에 4단계 BK21 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팀장과 참여교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사업팀장으로 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 1. 교육연구팀의 연간 사업계획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참여교수의 참여 요건 및 지원 대학원생 선발에 관한 사항
 - 4. 신진연구인력(연구교수 및 박사 후 연구원), 산학협력전담인력, 행정전담직원, 해 외학자의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참여대학원생 및 지원대학원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6. 참여교수 및 지원대학원생의 성과급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
 - 7. 교육연구팀의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
 - 8.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9. 기타 교육연구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 ④ 최종 의결에 대한 권한은 교육연구팀장이 갖는다.
- ⑤ 자체평가 수행을 위한 자체평가위원회는 운영위원회는 동일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외부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제12조 (장학금 지원 대학원생 선발기준)

- ① 교육연구팀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학원생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안 같다.
 - 1. 장학금 지원 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참여교수의 전일제 (주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경우) 지도 학생이어야 한다.
 - 2. 장학금 지원 대학원생은 4대 보험 미가입자여야 하며,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을 제출 및 확인한다.
 - 3. 교육연구팀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학원생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석사과정 : 입학한지 2년 (4학기)을 초과하지 않은 전일제 대학원생.
 - 2) 박사과정 : 입학한지 2년 (4학기)을 초과하지 않은 전일제 대학원생.
 - 3) 박사과정 수료 : 입학한지 2년 초과 4년 이하 (5학기부터 8학기) 인 전일제 대학원생.
 - 수료후 연구생의 경우에는 해당학기의 수료후 연구생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4) 통합과정 : 입학한지 6년이 초과하지 않은 전일제 대학원생.
 - 1학기부터 4학기까지는 석사과정과 동일한 규정 적용
 - 5학기부터 8학기까지는 박사과정과 동일한 규정 적용
 - 9학기부터 12학기까지는 박사과정 수료와 동일한 규정 적용
 - ※ 휴학기간, 군복무기간은 제외한 기간으로 산정.
- ② 교육연구팀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학원생의 선발 및 지원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 1. 교육연구팀의 장학금 지원 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팀 참여 대학원생 전체의 70 % 이내에서 선발한다.
 - 2. 대학원생 지원비 중 지원대학원생를 제외한 금액을 장학금으로 구성한다.
 - 3. 참여 교수 평가결과에 따라 장학금 지원 학생 수 배정 및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어 장학금 지원 학생들 간의 경쟁을 도입한다.
 - 4. 선발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을시 지도교수의 추천과 평가에 의해 매학기 선발한다.
 - 5. 매년 아래 항목에 대한 대학원생 평가를 실시한다.
 - 1) 교육연구팀 특화 의무 교과목 수강 여부 (단, 해당학기 신입생은 현재 교육연구 팀 특화 의무 교과목을 수강 중이어야 함)
 - 2) 교육연구팀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세미나 참가/발표 점수
 - 3) RQI-S 평가 점수
 - 4) GRL 프로그램 수행/참여 점수
 -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평가 항목
 - 6.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적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장학금 지원 대학원생의 지도 교수에게 다음 학기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교육연구팀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대학원생 1명에 대해서 석사과정 등록 금 전액 지원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이 전액 장학생의 경우 사업팀의 제반 연구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 (장학금 지원을 위한 대학원생 평가 기준: RQI-S) (2022.03.08. 개정)

평가항목			부사항		실적 기간
공인어학시험성적		•	토익 990점 : :시 : 기본점:	비준) 수 20점 부여	최근 2년
대학원 직전학기 학점	1) 석사 2-4학기 : 2) 박사 1학기 : 5 3) 박사 2-4학기 :	직전학기 (석사 1-3학기) 성적 직전학기 (박사			
교육연구팀 특화 의무 교과목 수강 (해당 학기)	1.미래기계기술세대 ※미래기계기술세대 산정에 불이익 2.교육연구팀 필수	1-3학기 성적) 최근 2년			
GRL 프로그램 수행 (매학기)		50	점 만점		직전 학기
	1) SCI(E) 논문 (게재된 논문만 인	정)	한 편당 200)점	최근 1년
논문실적	2) 국내논문 (게재된 논문만 인정) & SCI(E) 이외의 논문		한 편당 100점		최근 1년
SCI(E) 논문 가산점	JCR IF지수 기준 (1) 전체 SCI(E)논문 2) 각 분야 SCI(E)	최근 1년			
	국외	출	원	한 건당 150점	최근 1년
특허		등록		한 건당 300점	
701	국내	출원		한 건당 50점	최근 1년
	5		록	한 건당 100점	
	국외		30점(
학술발표	(BK기준만족)		20점(P	oster)	 최근 1년
(최대 100점)	국내 -		15점(_
수상실적 (최대 100점)	한 건당 50점(한 건	건당 점수/동	10점(P 등일 수상자수		최근 1년
논문 및 학술발표 반영비율	학생이 주저자(제1 4단계 BK21 논문 현 학생이 주저자(제1 4단계 BK21 논문 현				

- ① SCI(E)급 논문의 Impact Factor 와 해당 저널의 분야별 백분율은 평가를 수행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 저널의 Impact Factor 와 분야별 백분율을 적용한다.
- 1. 1차년도와 2차년도 연구 실적에 대해서는 JCR IF2020 와 해당 저널의 분야별 백분율을 적용함.
- 2. 3차년도부터는 당해연도 발표된 JCR IF 와 해당 저널의 분야별 백분율을 적용한다. (예: 3차년도 평가시에는 JCR IF2021 과 해당 저널의 분야별 백분율을 적용한다.) 제14조 (참여 대학원생 성과급 지급), (2022.01.18, 개정)
 - ① 참여 대학원생 성과급은 매 사업년도 최종월 장학금의 최종 지급 후 잔여금으로 분배하며, 성과급을 지급하는 참여 대학원생은 아래와 같이 선정한다. (2022.01.18. 개정)
 - 1. 1차적으로 참여교수에 대한 RQI 및 교육연구팀 기여도에 따라 참여교수별 성과급이 지급되는 총 참여 대학원생 수를 결정한다. (2022.01.18. 개정)
 - 2. 각 참여교수는 지도학생인 참여 대학원생 중 1항에 의해 배정된 성과급 지급 대상 대학원생 수를 고려하여 제12조 장학금 지원을 위한 대학원생 평가기준에 따른 총 취득 점수와 교육연구팀 기여도가 높은 참여 대학원생을 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2022.01.18. 개정)
 - 3. 운영위원회에서는 2항에 의해 추천된 성과급 지급대상 참여 대학원생 중 교육연구팀 예산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 참여 대학원생을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022.01.18. 개정)
 - 4. 기타 세부적인 참여 대학원생 성과급 지급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22.01.18. 개정)
 - ② 삭제 (단, 참여 대학원생 성과급은 2차년도부터 지급한다.) (2021.08.01. 개정)
 - ③ 참여 대학원생 성과급은 휴학, 자퇴 혹은 퇴학한 대학원생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만일, 휴학, 자퇴 혹은 퇴학한 대학원생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된 경우 해당 대학원생은 성과급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휴학, 자퇴 혹은 퇴학한 대학원생들이 성과급을 환 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연구팀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해당 대학원생의 지도 교수 에 대한 지원 제한 및 지원금 삭감등 참여/지원에 대한 사후처리를 지시 한다.)

제15조 (참여 대학원생의 최소 졸업 기준)

- ① 최소 참여 기준
 - 4단계 BK 사업 참여 가능 대학원생중 사업팀 특화 의무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하여 야 한다.

② 졸업 기준

- 1) 4단계 BK 사업에 참여하여 1학기 이상 장학금 수혜를 받은 대학원생들의 경우 아래 의 졸업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가. 석사 과정 : 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1편 논문 게재
 - 해당 졸업(대상)자가 SCI(E) 급 논문 공동 저자인 경우 연구 재단 등재지 1편 게재로 인정한다.(단, 이 경우 해당 논문을 다른 석/박사 졸업(대상)자들의 졸업 요건 평가에 사용할 수 없다.)
 - 나. 박사 과정 및 박사 수료 : SCI(E) 급 논문 2편 게재 (분야별 상위 10 % 논문의 경우 1편 게재)
 - 다. 석박사 연계 과정 : 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1편 논문 및 SCI(E) 급 논문 2편 게 재 (SCI(E) 급 논문의 경우 분야별 상위 10 % 논문의 경우 1편 게재)
 - 라. 졸업 기준의 논문 게재의 경우 연구재단 등재지 및 SCI(E) 급 논문 모두 주저 자로 졸업생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마. Acceptance Letter 도 졸업 기준 논문 목표 달성에 포함된다.
 - 바. 기타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 4단계 BK 사업에 참여하여 1학기 이상 장학금을 받은 대학원생들이 졸업 기준을 만족시키기 못하고 졸업할 경우에는 유예 조건으로 각 과정별 1회에 대하여 아래의 기한내에 해당 대학원생별 졸업 요건에 해당되는 논문 종류와 개수에 맞추어 Accept Letter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교육연구팀은 운영위원회 의결을통해 해당 대학원생의 지도 교수에 대한 지원 제한 및 지원금 삭감 등 참여/지원에 대한 사후처리를 지시 한다.
 - 가. 석사 과정 장학금 수혜자 : 졸업 후 6 개월 이내
 - 나. 박사 과정 및 박사 수료 장학금 수혜자: 졸업 후 1년 이내
 - 다. 석박사 연계 과정 장학금 수혜자 : 졸업 후 1년 이내
 - 라. 2) 의 졸업 조건 유예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졸업 전 해당 대학원생별 졸업 요건에 해당되는 논문이 제출되어 있어야 한다.
 - 마. 졸업 기준 유예 기간 내에 해당 대학원별 조건에 해당되는 논문의 개수에 맞도록 Accept Letter가 제출된 경우에는 졸업 조건 유예 사항이 완료된 것으로 하여, 다시 졸업 논문 유예 조건을 사용할 수 있다.
 - 마.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③ 적용 시점

- 참여 대학원생의 최소 참여/졸업 기준의 적용은 각 과정별 아래의 시점부터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적용한다
- 가. 석사 과정 : 2020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
- 나. 박사 과정 및 박사 수료 :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다. 석박사 연계 과정
 - 4학기 이전 학생
 - 4학기 이후 학생

제16조 (신진연구인력 활용지침)

- ① 신진연구인력은 조선대학교 기계공학과 4단계 BK 사업팀 소속의 연구실에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팀의 연구 실적 및 성과에 기여하여야 하며, 사업팀에서 주관하고 기획하는 제반 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 ② 신진연구인력의 경우 월 300 만원 이상 국고에서 지원된 경우에 한하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며, 타 재원에서 지원된 기간은 본 사업 참여로 불인정한다.
- ③ 신진연구인력은 출강 및 타 연구과제 참여시작일 전 사업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신진연구인력의 타 과제 참여는 대학의 장 및 사업팀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신진연구인력의 시간강의 제한 기준은 BK21플러스사업 훈령 및 지침을 따른다.
- ④ 사업팀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⑤ 임용기준
 - 1) 박사후과정연구원 : 교육연구팀 소속 교수가 추천하고 SCI 논문 실적 및 연구업적 이 우수한 경우
 - 2) 연구교수 : 박사후과정연구원 경력이 2년 이상이고 SCI 논문 실적 및 연구업적이 우수한 경우
 - 3) 급여지급: BK 국고로 지원함. (단, 참여 교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참여 교수 지원 금액과 BK 국고 지원 금액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4) 평가기준 : 활용교수의 SCI 논문실적과 신진연구인력의 SCI 논문 실적을 심사하여 선발한다.
 - 5) 평가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최근 3년간 SCI 논문 개수와 분야별 Normalized Impact Factor 합.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 6) 강의시간 및 강사료 : 정규 강의를 할 경우 BK 연구교수인 경우 3학점까지 강의를 할 수 있다.
 - 7) 강사료는 학교의 강사료 지급 규정에 따른다.
 - 8) 타 연구과제 수행 허가 : 연구교수가 자격이 되는 외부 연구비 수주 시 허가한다.

제17조 (행정전담직원 임용 및 활용지침)

- ① 교육연구팀의 행정전담직원은 BK사업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연구팀장의 명을 받아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② 행정전담직원은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사업목적에 부합된 자이어야 한다.
- ③ 행정전담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연구팀장이 임명해야하며, 다음 각 호

- 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임용계약서
- 2) 주민등록등본 1부
- 3) 최종학위증명서 1부
- 4) 이력서 1부
- ④ 행정전담직원의 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BK 사업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BK사업이 종결되는 날 전일까지로 한다.
- ⑤ 행정전담직원의 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행정전담직원의 보수는 4단계 BK21 사업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2) 법정 부담금은 교육연구팀에서 지급하며, 임용 후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 1년마다 보수월액의 1월분을 퇴직급여로 적립하여 지급한다.
 - 3) 보수지급일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보수지급일을 준용한다.
 - 4)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행정전담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 한다.
- ⑦ 행정전담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육연구팀의 운영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 2) 사업 업무에 고의로 태만한 경우
 - 3) 교육연구팀 해당 사업이 취소되거나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 4) 고용계약을 위반한 경우
 - 5) 조선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 손상 행위를 한 경우

제18조 (국제 협력 경비 관련 장·단기 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및 지원 기준)

- ① 본 교육연구팀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국제협력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국제 협력 사업은 국제학술회의 발표 및 장·단기 해외연수를 포함한다. (해외연수생은 귀국 후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사업팀에 제출한다.)
 - 2. 국제 협력 사업은 교육연구팀 전일제 참여대학원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3. 해외기관으로의 국제학술회의 발표 및 장·단기 해외연수는 해외 연구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 참여, 현지 연구수행 시 지원 가능, 참여교수는 연수 대상 학생의 지도교수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다.
 - 4. 단기 해외연수는 연수기간 15일 이내, 장기해외연수는 15일 초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5. 국제학술대회참가는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가.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은 단기 공채 4단계 BK21 사업의 기준을 따른다.

- 나. 국제학술대회 당 발표 논문별 저자 중 3인 이내의 지원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및 해당지원 대학원생의 지도교수에 대하여 지원 가능하다.
- 6. 장기해외연수생 선정은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 1). 실적평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사업팀장이 선정한다.
 - 2). 실적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실적을 포함하며 항목별 반영 비율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장기해외연수 시 부득이하게 MOU체결 없이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초청장 등 공식적인 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가. RQI-S 점수
 - 나. 영어소통 능력 검증 자료 (공인영어점수 등)
 - 다.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라. 교육연구팀 프로그램 참여도 (GRL, 필수 이수 교과목 참여 등)
 - 마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항목
- 7.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을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1) 항공료, 교통비 및 체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 2)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교육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교육훈련비에는 수업료, 숙박비(기숙사비 및 홈스테이 비용), 식비, 교재비, 의료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 3) 부득이하게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장기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
- ② 다음의 각 항에 해당될 경우 교육연구팀에서 지원하는 연수경비를 지급 중단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1. 연수자로 선발된 후 연수자 본인의 사유로 인하여 연수가 불가능할 경우
 - 2. 정해진 연수기간 중 일시 귀국 기간이 14일을 초과할 경우 (장기연수 경우 9개월 이상을 초과할 경우)
 - 3. 귀국 후 연수의무 사항을 불이행 할 경우
 - 4. 기타 교육연구팀에서 연수비 및 체제비의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연수경비 지급 중단 및 일부 회수가 된 경우 향후 교육연구팀에서 시행하는 국제협력 프로그램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③ 국제학술회의 발표 및 장·단기 해외연수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 1. 국제학술회의 참가예정일로부터 4주전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청서류
 - 가. 국제 해외학술대회 지원신청서 (별표 2 서식) 1부
 - 나. 발표논문 및 학술회의 팜플렛 (일정 및 발표자 일정 명시) 1부

- 다. 항공권 INVOICE 1부
- 라. 학회 Accept Letter 1부
- 2. 국제학술회의 발표 및 단기해외연수에 참가한 자는 참가 후 7일 이내에 사업팀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출서류
 - 가. 국제학술회의 참가 출장보고서 및 증빙서류 1부
 - 나. 항공권 보딩패스 원본(e-ticket 또는 항공 ticket) 1부
 - 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출입국 stamp 확인 및 신분확인 되는 면 각 1page) 1부
 - 라. 학회 프로그램 책자 및 본인 논문 게재 부분 1부
 - 마. 학회 등록비 영수증 1부
- 3. 장기 해외 연수에 참가한 대학원생은 도착 후 체재지 도착보고서를 10일 이내에 사업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15일 이상 장기 해외연수의 경우, 연구결과는 귀국 후 1년 이내에 정기학술지에 게재되도록 해야 한다.
- 4. 국외연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4,5,6)의 서식에 따른 서류를 사업팀에 제출하여야한다.

제19조 (해외학자 초빙에 관한 지침)

교육연구팀에 해외학자를 초빙 할 경우, 선발기준과 활용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석학 초빙 기준은 본 사업팀의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단기간(1개월 미만) 및 장기간(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에 걸쳐 해외석학을 초 빙할 수 있다.
- ② 세부적인 선발 기준은 사업팀 내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초빙한 해외석학은 특강, 세미나, 연구, 대학원생 교육에 활용한다.
- ④ 초빙 지원 신청서와 결과 보고서는 (별표 7.8)의 서식을 따른다.

제20조 (대학원 교재개발) (2021.08.01. 개정)

교육연구팀에서 대학원 교재 개발을 수행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진행하여야 함.

- ① 교육연구팀 참여 교수는 누구나 대학원 교재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교재 개발을 할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1인 이상 참여시켜서 진행하여야 한다.
- ③ 내부 (교육연구팀 소속) 참여교수에게 인건비 및 수당 성격의 경비는 지급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원고료는 지급할 수 있다.

원고지 1매(200자)	5,000원 이하
A4 용지 1매(80칸, 20줄)	20,000원 이하
PPT 본문 1매	10,000원 이하

④ 교재 개발신청을 위해서 교재 개발 신청서 (별표 9)와 수업 계획서 (별표 10)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⑤ 교재 개발비를 지급하기 위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교재 개발 보고서 (별표 11)과 개발된 교재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교육연구팀 홈페이지 운영)

교육연구팀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교육연구팀 현황, 사업 참여자, 사업계획서, 사업진행 상황, 사업실적 및 성과, 지원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내역 등을 게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 도록 한다.

제22조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교육연구팀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집행 관련된 사항은 연구재단에서 제공된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다. 또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연구팀장이 정하도록 한다.

(부칙)

- 1. 이 규정은 2021년 2 월 1일부터 시행함.
- 2. 제 5조 ② 항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함.
- 3. 개정된 제 20조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함.
- 4. 개정된 제 10조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함.
- 5. 개정된 제 14조는 2022년 1월 18일부터 시행함.

(별표 1)

참여 교수 업적 평가기준 (RQI-P)

1. 연구업적

번호	평가영역	평 가 항 목 기 준	배점
1	학술논문	1) 국제전문학술지(SCI, SSCI, A&HCI, SCI-E)게재논문 * SCI, SSCI, A&HCI, SCI-E에 포함된 학술지의 최근연도 IF순위가 JCR 학문 분야별 상위 10% 이내인 경우 100%, 30% 이내인 경우 50% 가산 점 부여 2) 국제전문학술지(SCOPUS) 및 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 논문 * 1)과 2)이 중복될 경우 1)을 우선 적용함	240
		1) 국제 학술회의 및 세미나 교내 개최	40
		* 해외 연구자 1인 이상 참가 2) 국내 학술회의 및 세미나 교내 개최 * 타기관 연구자 1인 이상 참가	20
2	학술회의	3) 국제 학술회의 발표 (구두 및 포스터) 4) 국내 학술회의 발표 (구두 및 포스터) * 학술회의 취득 총점은 최고 100점을 상한선으로 한다.	20 10

2. 산학협력 업적

번호	평가영역	평 가 항 목 기 준	배점
1	특허	1) 국제특허 (SCI 1건으로 인정)	240
'	701	2) 국내특허	120
2	기술이전	1) 전체계열: 1,000만원 240점 기준 120점+{(기술료수입-500만원)/500만원)*120점} * 해당연도에 대학에 입금된 기술료 수입 기준 * 기술료수입에 대한 업적점수는 상한 제한이 없음	240
		1) 전체계열 : 500만원 5점 기준 5점+{(연구비수혜액-500만원)/500만원)*5점}	5
		2) 산업체 순수 연구비 전체계열 : 1,000만원 120점 기준 60점 + {(연구비 수혜액 - 500만원)/500만원)*60점}	120
	Q J III	3) 국제 연구비 (외국에서 지원한 연구비) 산업체 순수 연구비 배점 기준의 2배 적용	240
3	연구비	가. 해당 연도에 대학에 입금된 해당교수 몫의 교외연구비 기준 나. 대응자금 제외, 순수 우리 대학 지분 기준 다. 소숫점 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 라. 다만, 공동연구로서 연구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연구비 총액을 기준으로 배점을 산출한 후 연구책임자는 [{1÷(m+1)}×2]×배 점으로, 공동연구자는 {1÷(m+1)}×배점으로 각각 점수 부여(n은 공동 연구원 수) 마. 연구비 취득 총점을 최고 200점(산업체 순수 연구비 및 국제 연 구비 취득 점수 제외)을 상한선으로 한다.	

3. 연구업적 비율

- 단독: 100%

-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 4단계 BK 21 논문 환산 편수 규정을 사용함

- 공동연구자(주저자 이외): 4단계 BK 21 논문환산 편수 규정을 사용함

4. 업적 등가표

구분		IF	SCI(E) 논문 환산	연구재단 등재지
SCI(E) 논문		라야별 상위 10 % 이내	2편	4편
(주저자 : 제 1저자 또는	분0	⊧별 상위 10% 초과 30 % 이내	1.5편	3편
교신저자)	ᆫ	년야별 상위 30 % 초과	1편	2편
		E) 논문 동저자)	_	1편
		미국, 일본, EU	1편	3편
국제특허 등학	독	기타 국가	1편	2편
		단 등재지 러자 또는 교신저자)	_	1편
	국내 :	특허 등록	_	1편
		100,000 천원 이상	2편	4편
기술이전		100,000 미만 - 50,000 천원 이상	1.5편	3편
기술이언		50,0000 천원 미만 - 10,000 천원 이상	1편	2편
		10,000 천원 미만	-	1편

단, 1편의 논문에 대해 주저자로 등록된 SCI(E) 급 논문 1편은 2편의 공동 저자로 등록된 SCI(E) 급 논문 2편으로 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분야별 상위 IF 값에 의한 가산 편수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5. SCI(E) 급 논문의 Impact Factor 및 저널의 분야별 백분율 적용
 - ① SCI(E)급 논문의 Impact Factor 와 저널의 분야별 백분율은 원칙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해당 연도의 Impact Factor 를 적용한다.
 - 1. 1차년도와 2차년도 연구 실적에 대해서는 JCR IF2020 와 해당 저널의 분야별 백분율을 적용함.
 - 2. 3차년도부터는 당해연도 발표된 JCR IF 와 분야별 백분율을 적용함. (예 : 3차년도 평가시에는 JCR IF2021 과 해당 저널의 분야별 백분율을 적용함.)

(별표 2)

국제 해외학술대회 지원신청서

지도교수 -	소속		직급			연락처	
시노교수	성 명	(한글)		(영문)			
동반 대학원생	성명		과정 (학기)		주민	민등록번호	
	성명		과정 (학기)		주민	민등록번호	
논문	논문 1						
제목	논문 2						
명 항				개최기관	<u></u>		
발표장소				발표일자	th		

위와 같이 조선대학교 4단계 BK21 사업 스마트 기계 부품 미래인재 양성사업팀 해외학술대회 지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 붙임 1. 학회일정, 발표 논문 및 학술회의 팜플렛(일정 및 발표자 일정 명시) 1부
 - 2. 출장신청서(교수/학생)
 - 3. 교통비, 등록비 영수증
 - 4. 여권사본 1부
 - 5. 항공권 INVOICE 1부
 - 6. 학회 Accept Letter 1부

조선대학교 4단계 BK21 사업 스마트 기계 부품 미래인재 양성사업팀장 귀하

(별표 3)

4단계 BK21 사업 스마트 기계 부품 미래인재 양성사업팀 국외연수 신청서

OI A TI	소속학과					
연수자	성명			직위/학위과정		
연수기관 (국가명/도시명)						
초청자	성명			직위		
연수기간						
연수목적						
연수일정 및 주요내용						
지도교수 추천의견						
	위와 같이	국외연수를	신청합니	니다.		
	년	월	일			
	신청지 지도교		(인) (인)			
조선대학교 4단계 BK21 사업 스마트 기계 부품 미래인재 양성사업팀 귀하						

(별표 4)

4단계 BK21 사업 스마트 기계 부품 미래인재 양성사업팀 국외연수 계획서

신청자	지도교수	
학위과정	연수기간	
연수국가	연수기관	
연수 목적		
주요 연수내용		
기대효과		

(별표 5)

4단계 BK21 사업 스마트 기계 부품 미래인재 양성사업팀 국외연수 결과보고

OLA TI	소속학과			
연수자	성명		직위/학위과정	
연수기관				
초청자	성명		직위	
연수기간				
주요 연수결과				
	위와 같이 국	외연수 결과를 보고	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지 지도교			
조선대학교 4단기	ᅨ BK21 사업 :	스마트 기계 부품	미래인재 양성사업	팀 귀하

※ 덧붙임: 1. 여권사본 (인적사항 및 입/출국 기록면) 1부2. 국외 연수결과보고서 1부 (별표 6 서식)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1. 연수자:	
2. 학위과정/학기:	
2. 연수기간:	
3. 연수기관:	
4. 초청자 (직위/성명):	
5. 연수결과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되 분량 은 제한없음)	
(1) 연수 배경 및 목표	
(2) 재료 및 방법	
(3) 연수결과 및 토의	
(4) 참고문헌	
(5) 기타 (연수경험담/전경/실험실/실험 원 사진 등)	

(별표 7)

전문가 초청 세미나 지원 신청서

1. 일 시: 년 월 일() :00~ :00

2. 장 소 : 3. 목 적 : 4. 초빙인사

번호	성	명	소	속	직	ı	주민등록번호	비고
1								
2								
3								

5. 예상 소요경비 내역

번호	항목	금액(원)	비고
1	강사료		
2	회의비		
3			
	Я		

※ 첨부 1. 강사이력서 1부. 끝.

상기와 같이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를 위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조선대학교 4단계 BK21 사업 스마트 기계 부품 미래인재 양성사업팀 귀하

(별표 8)

전문가 초청 세미나 결과 보고서

일 시	
장 소	
목 적	
참석대상 및 인원	
세미나 주제 및 내용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 첨부 1. 참석자 명단 1부,
 - 2. 정산서 1부.

상기와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인)

조선대학교 4단계 BK21 사업 스마트 기계 부품 미래인재 양성사업팀 귀하

전공 교재 개발 계획서

1. 기본정보

개발분야						
교과목명	국문					
正井寺で	영문					
	구분	신규	개발()	개편() '	'해당사항에 √
학점:	-이론-실습				이수구분	(선택or필수)
일반고	}목-FL-PBL				편성학년/학 기	
교과목표						
교육내용 (강좌설명)						
교육방법 (구체적 설명)						
교재 개발·운영으로 인한 기대효과						

책임교원	성명		
*교육연구팀	소속	직위	
참여교원에 한함	교내전화	휴대폰	
고도서그그이	성명		
공동연구교원 *교육연구팀 참여교원에 한함	소속	직위	
	교내전화	휴대폰	
	성명		
외부전문가	소속	직위	
	교내전화	휴대폰	

※공동연구자가 다수일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책임교원 : (인)

공동연구교원 : (인)

외부전문가: (인)

스마트 기계부품 지역 미래전문인력양성팀 귀하

(별표 10)

수업계획서

[1주 수업계획서]

항 목	내 용
수업목표	
수업내용	
수업방법	

[2주 수업계획서]

항 목	내 용
수업목표	
수업내용	
수업방법	

[3주 수업계획서]

항 목	내 용
수업목표	
수업내용	
수업방법	

[4주 수업계획서]

항 목	내 용
수업목표	
수업내용	
수업방법	

[5주 수업계획서]

항 목	내 용
수업목표	
수업내용	
수업방법	

[6주 수업계획서]

항 목	내 용
수업목표	
수업내용	
수업방법	

[7주 수업계획서]

항 목	내 용
수업목표	
수업내용	
수업방법	

[8주 수업계획서]

항 목	내 용
수업목표	
수업내용	
수업방법	

[9주 수업계획서]

항 목	내 용
수업목표	
수업내용	
수업방법	

[10주 수업계획서]

항 목	내 용
수업목표	
수업내용	
수업방법	

[11주 수업계획서]

항 목	내 용
수업목표	
수업내용	
수업방법	

[12주 수업계획서]

항 목	내 용
수업목표	
수업내용	
수업방법	

[13주 수업계획서]

항 목	내 용
수업목표	
수업내용	
수업방법	

[14주 수업계획서]

항 목	내 용
수업목표	
수업내용	
수업방법	

[15주 수업계획서]

항 목	내 용
수업목표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목명]

교재개발 결과보고서

교과목명 :

연구책임교수:

2021.00.00

스마트 기계부품 지역 미래전문인력양성팀

※ 이 교재는 4단계 BK21사업 스마트 기계부품 지역 미래전문인력양성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1. 교재 개발 필요성
_
_
-
2. 교재 개발 목표 및 교재 구성
-
-
-
3. 교재 개발 결과
-
-
_
4. 기대효과
_
_
_
별첨 : 개발된 교재 1부
결과 보고서는 총 4 페이지 이내로 작성